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6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이원택・어기구・조인철

이병진 • 임미애 • 문대림

위성곤 • 윤준병 • 임호선

송옥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·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. 한편,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취소,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.

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,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 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,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,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"토종가축"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,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2조, 제9조의2 신설, 제50조).
- 나.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,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(안 제7조, 제7조의2 신설).
- 다.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(제21조 삭제).
- 라.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, 보고, 검사,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4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의2 중 "토종닭 등"을 "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으로서"로,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"를 "제9조의2"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"을 "다음"으로, "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"를 "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, 검정의신청절차,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"를 "검정의 종류·기준, 제2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"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여야하다.

제7조의2 ·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검정기관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 체를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"검정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,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2(토종가축의 인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 및 외형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토종가축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축산물을 가공, 취급[축산물의 저장, 포장(소분 및 재포장을 포

함한다),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]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및 취소,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3(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, 조직,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3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

경우

- 4. 그 밖에 인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인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,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가축 인공수정소[(家畜 人工授精所), 이하 "수정소"라한다]"를 "가축 인공수정소[(家畜 人工授精所),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. 이하 "수정소"라한다]"로, "갖추어"를 "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(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소재지로 한다)를 관할하는"으로 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33조의3제1항 중 "이하 이 조에서"를 "이하"로 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보고·검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 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·사무소 또는 축사 등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축산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 문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
- 2.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
- 3.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
- 4.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
 - 2.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
 - 3.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
- 제56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9.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·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"토종가축"이란 제1호의	1의2
가축 중 한우, <u>토종닭 등</u> 예	<u>토종닭 등</u>
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	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</u>
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	<u>는 가축으로서</u>
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	
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	
것으로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</u>	
<u>로 정하는 바</u> 에 따라 인정된	제9조
품종의 가축을 말한다.	<u>의2</u>
2. ~ 10의2. (생 략)	2. ~ 10의2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가축의 검정) ① 농림축산	제7조(가축의 검정) ①
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	
량 정도를 확인·평가하기 위하	
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	<u>다음</u>
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	<u>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</u>
<u>을 지정하여 다음</u> 각 호의 <u>가</u>	<u>수 있다</u> .
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.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

 ②
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

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, 검정의

 신청절차, 검정의 종류 및 기준

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

 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<u><신 설></u>

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검정기관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정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(이하 "검정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 설>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 행한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, 그 밖 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 로 정한다.
- 제9조의2(토종가축의 인정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 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 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 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토종가축에서 축산물을 생산하 거나 해당 축산물을 가공, 취급 [축산물의 저장, 포장(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),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]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.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 가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및 취소,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
 제9조의3(토종가축
 인정기관의

 지정
 등)
 ① 농림축산식품부장

<신 설>

관은 인력, 조직, 시설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(이하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수행한 경우
- 4. 그 밖에 인정업무를 부실하

 게 수행하는 등 인정기관으

 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

제17조(수정소의 개설신고 등) ①
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
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
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
[(家畜 人工授精所), 이하 "수
정소"라 한다]를 개설하려는
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
력을 갖추어 시장·군수 또는
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② ~ ④ (생 략)

 제21조(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

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</u> 하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, 그 밖 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 로 정한다.

제17조(수정소의 개설신고 등) ①

------<u>가축 인공수정소</u> [(家畜 人工授精所),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 다. 이하 "수정소"라 한다]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 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를 인증할 수 있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 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 수업체 인증의 기준·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의3(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지취소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교육기관등"이라 한다)을 지정·고시할 수있다.
 - ②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세33조의	3(1	교육기	관등	의	지정	Ę,	<u>[</u>
취소)	1						-
							-
							-
							_
- <u>이하</u> -							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9조의2(보고·검사 등) ① 농 립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·사무소 또는 축사 등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축산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

제50조(청문) <신 설>

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

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

 자
- 2.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
- 3.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
- 4.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
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
 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
 록을 한 자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50조(청문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 기관의 지정 취소
 - 2.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

 기관의 지정 취소
 - 3.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

(생 략)

제5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1. ~ 18. (생략)
 <신설>

③ (생략)

기관등의 지정 취소

- 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- 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 - 2 -----
 - 1. ~ 18. (현행과 같음)
 - 19.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·자료제 출을 한 자 또는 출입·검사 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 - ③ (현행과 같음)